

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1. 10. 10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10. 10(의안 제37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59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(2001.10.22)

2. 제안이유

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 내용중 2001년도 지방규제사무 심의에서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폐지키로 결정(2001.6.29)된 사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0. 대부받은 양수기의 양도금지(현행조례 제8조) 및 양수기를 대부받은자의 관리감독(현행조례 제9조)의 조항삭제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0. 동 조례안은 1995년 6월 1일 공포, 시행되어 오다가 지방규제사무 심의에서 현실성 없는 동조례 제8조(양도금지)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서 폐지하고
- 0. 또한, 동조례 제9조(관리 및 감독) 규정 역시 현실성없는 불필요한 조항일뿐만 아니라, 동조례 제11조(사용료)와 제12조(반환 및 변상) 조항과 중복규정으로 폐지키로 하였으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원안의결